

〈 수시 공시 〉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)에 의거하여,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해지할 예정입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	펀드명
1	신영아이젠 60 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2. 상세 내역

펀드명(운용펀드)	펀드명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대상 펀드구분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S형	KR5209528151	K55209BH9190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	KR5209528151	K55209BH9091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S-P형	KR5209528151	K55209BH9208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C형	KR5209528151	K55209BH9117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C-Pe형	KR5209528151	K55209BH9174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Ae형	KR5209528151	K55209BH9109	2018-08-03	산정대상
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운용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Ce형	KR5209528151	K55209BH9125	2018-08-03	산정대상

3. 해지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(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)

4. 해지 일자 : 2019년 12월 12일

5. 고객안내문 발송 : 한국예탁결제원 통해 발송 예정

6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